

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박진형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174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6년 5월 3일

발 의 자 : 박진형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우형찬·서영진·박운기·김상훈·  
최관술·성중기·이창섭·박중화·  
박기열·강감창 의원(10명)

## 1. 제안이유

- 현행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관리하고 있는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의 개수를 2개소 이내로 하고, 다른 현수막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3개소까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음

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현수막 설치개수를 제한함에 따라 현수막 추가 게시를 원하는 사업자의 광고기회가 사라지고, 현수막 추가 게시로 자치구가 얻을 수 있는 도로 점용료 및 광고 수입금의 징수기회가 사라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되고 있음

따라서 현수막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현수막 설치 제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해당 자치구 관할구역 내 사업자의 광고기회 확대와 함께 자치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- 가.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현수막 개수 제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제2항제1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제1호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법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2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 기준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<u>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며,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개소</u> 까지 게시할 수 있다.</p> <p>2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12조(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·관리 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.</p> <p>1. 해당 구 관할구역 안에 있는 업소 등의 현수막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,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에 게시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<u>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과 다른 현수막의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2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사항 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

3. 미첨부 사유

- 별도의 비용발생 내역 없음.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의원 박진형